

제4장

법령 유형별 작성례

1. 법률 작성례
2. 대통령령 작성례
3. 부령 작성례

알기 쉽고 반듯한 법령으로
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
법률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

1 법률 작성례

- 기본 조
- ◇ 선택 조 ◎ 선택 항, 선택 호 / 선택 단어, 구, 절
- <> 생략할 수 있는 부분

• 법률 작성례는 현행 법률과 『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』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,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법률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법률 제 호

○○○법/○○○에 관한 법률

목적

제○조(목적) 이 법은 ~을/~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/규정하여 ~에 ~하는 것을/이바지하는 것을/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◇조(목적) 이 법은 ~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/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정의

제○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★★업**”이란 ~를 위하여 ~를 제공하거나/갖추어 ~를 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2. “~업”이란 ~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~를 말한다.
3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예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과 출판을 말한다.

제○조(정의) 이 법에서 “~업”이란 ~것을 말한다.

계획

제○조(★★종합계획) ① **★★**장관은 ~을 위하여 ~년마다 **★★**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에 관한 사항
2. ~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~에 필요한/관한/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★★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/수립할 때에는 미리/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종합계획은 ★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/~위원회가 심의한 후 확정된다. 이 경우 ★★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★★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/필요하다고 인정하면/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/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위원회

제○조(★★위원회) ① ~을 심의하기/수행하기 위하여 ~부장관 소속으로/~부에 ★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에 관하여 ~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/응하게 하기 위하여 ~부장관 소속으로/~부에 ★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~로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~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/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/관한(○)/관하여 필요한(x)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○조(이사회)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허가

제○조(★★업의 허가) ① ★★업을 하려는/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★★, ★★과 ★★를 갖추어 ★★장관/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★★업을 하려는/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★★, ★★과 ★★를 갖추어 ★★장관/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/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/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,/받아야 한다. 다만, ~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~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/할 때에는 미리/할 때에는 사전에 제○조에 따른 ~위원회의 심의/검토를 거쳐야 한다.

④ ~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조건, 기한이나 ☆☆를 붙일 수 있다.

⑤ ★★장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★★일 이내에 그 사실을 ~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★★과 ★★ 등의 허가 세부기준과 <그 밖의>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/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○조(허가를 받지 아니한/않은 영업 등의 금지) ★★업자가 아닌 자는 ★★를 업(業)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/하면 안 된다.

제○조(허가 요건) ① ★★장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/



제○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○조(허가 제한)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(각 호 내용 생략)

제○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○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(자연인만 있는 경우에는 ‘사람’)
3. 이 법, 「~법」 또는 「~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~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이 법, 「~법」 또는 「~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제○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(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○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제○조(조건부 영업허가) ①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○조에 따른 시설과 ☆☆ 등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◎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**★★**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②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☆☆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◎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**★★**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○조(~허가의 유효기간) ① 제○조에 따른 ~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**★★**년으로 한다.

②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~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**★★**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
◎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~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장기간은 **★★**년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~부령으로 정한다.

제○조(허가증의 발급 등) ①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에 따른 허가를 하면/할 때/하였으면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~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/기록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/내주어야 한다.

② ~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면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/재발급받을 수 있다.

③ 허가증은 타인/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.

제○조(영업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★★**업자/중전 사업자/중전

영업자의 지위/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·의무/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1. ★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 2. ★★업자가 영업을 <전부> 양도한 경우 양수인
 3. 법인인 ★★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
- ◎ ★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/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법인인 ★★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★★업자/종전 사업자/종전 영업자의 지위//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·의무//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★★업자/종전 사업자/종전 영업자의 지위//허가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·의무//허가 등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 이 경우 종전의 ★★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(換價)
3. 「국세징수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

③ 제1항/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/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★★일 이내에 그 사실을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◎ 제1항/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○조제○항제○호부터 제○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○조(행정처분 효과의 승계)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★★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★★년간 새로운 ★★영업자에게 승계되며,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★★영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운 ★★영업자(상속으로 승계 받은 자는 제외한다)가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○조(영업의 개시) ① 제○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★★일/★★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

② ★★장관/시·도지사는 ★★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면 그 ★★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/★★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★★업자는 영업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○조(휴업, 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) ① 제○조에 따른 ★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★★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중단한/휴업한 경우
- ◎ ★★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/휴업하려는 경우
2. ★★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둔/폐업한 경우
- ◎ ★★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두려는/폐업하려는 경우

1 소개

2 용어

3 문장

4 작성례

5 어문규정

3. 일정 기간 중단한 ★★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

◎ 일정 기간 중단한 ★★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단 기간/휴업 기간은 ★★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★★장관으로부터/시·도지사로부터 그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○조(영업자 준수사항) ★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/준수하여야 한다.

제◇조(영업자 준수사항) ★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○조(영업 제한) 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/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업의 영업 시간, 영업소의 관리·운영, 그 밖에 영업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.

제○조(허가취소 등) ① 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 ★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★★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○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
2. 제○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 제○조제○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○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3.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
4. 제○조에 따른 기간(제○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이 지날 때까지 ~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5.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~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
6.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허가기준/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/미달하게 된 경우
7. 제○조에 따른 ~명령을 위반한 경우
8. 제○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
9. 제○조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10. 제○조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
11. 제○조에 따른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~부령으로 정한다.

◎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/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~부령으로 정한다.

신고

제○조(★★ 등의 신고 등) ① ★★하려는 자는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다만,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★★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>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//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바로/지체 없이 발급해야/내주어야 한다.

등록

제○조(★★업의 등록 등) ① ★★사업을 하려는/★★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업종별로>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★★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◇조(★★업의 등록 등) ① ★★을 개설하려는 자는 그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업종별로>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★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/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/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★★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
◎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★★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퍼센트/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2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/비영리법인

④ 제1항에 따라 ★★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별로 ★★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~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○조(★★업의 등록기준)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★★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, 자본금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, 시설과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/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○조(등록증의 발급 등) ① ★★장관/시·도지사는 ★★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/★★업의 등록을 하면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업 등록증과 ★★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/내주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은 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/기재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★★일 이내에 ★★장관/시·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~부령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1 소개

2 용어

3 문장

4 작성례

5 어문규정

과징금

제○조(과징금처분) ①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<**★★**사업자가> 제○조제○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/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/영업정지를 하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**★★**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<과징금>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/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~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/~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○항과 제○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~부령으로 정한다.

제○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) ①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에 따라 **★★**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1. 자연재해,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
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·분할납부와 담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행강제금

제○조(이행강제금) ①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~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,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○회를 초과할 수 없다./이행강제금은 ○년을 초과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없다.

⑥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○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
⑦ **★★**장관은/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/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

법률에 따라 징수한다.

-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수수료

제○조(허가 등의 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제◇조(허가 등의 수수료)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허가를/허가 또는 ★★를 받으려는 자는 ~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특수법인

제○조(사업) 공사는/공단은 <제○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>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(각 호 생략)

제○조(임원)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○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- ◎ 공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○명을 포함하여 ○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,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장과 감사는 ★★장관이 임명한다.

◎ 이사장은 ○○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③ 이사는 ○○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다만,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>

제○조(대리인의 선임 등) 법인의 대표는 직원 중에서 법인의 소송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, 선임된 대리인인 직원은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및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
제◇조(대리권)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한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을 갈음하여 공단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
보고·검사

제○조(★★업자의 보고) ① 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 ~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/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/총리령으로/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업자로 하여금/★★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○조(보고·검사 등) ① 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 ~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/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/★★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★★업자의 사무실,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,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★★일 전까지 검사일시, 검사목적, 검사내용 등의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/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/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<지니고>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~부령으로 정한다.

행정지도

제○조(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등) ①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~을 위하여 **★★업을**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

◎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~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**★★업을** 하는 자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영업시설 등이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**★★업자가 제○조제○항의 위반행위를 하면/제○조제○항을 위반하면**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등을 고치거나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폐쇄조치

제○조(폐쇄조치) ①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제○조제○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/신고하지 아니하고 **★★영업**을 하거나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**★★영업**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/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1.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
 2.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
 3.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(封印)
- ②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.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1.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/인정하는 경우
 2.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
- ③ **★★장관은**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<지니고>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공표

제○조(☆☆의 공표) ①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○○한 경우 대통령령/~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☆☆을 공표할 수 있다./공표하여야 한다.

청문

제○조(청문) **★★장관은/시·도지사는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/할 때에는 미리/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제○조에 따른 허가취소
2. 제○조에 따른 등록취소

제◇조(청문) 제○조에 따라 ★★의 허가를 취소하려면/취소할 때에는 미리/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준용

제○조(준용규정) ☆☆☆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/☆☆에 관하여는 「~법」 중 ★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위임·위탁

제○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★★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★★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★★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○호의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(각 호 내용 생략)

제◇조(업무의 위탁) 이 법에 따른 ★★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~기관이나 ~단체/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

제○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○조부터 제○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벌칙

제○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★★년 이하의 징역 또는 ★★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>

1. 제○조제○항을 위반하여 ~를 한 자
2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

제○조(양벌 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/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○조부터 제○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/제○조, 제○조 또는 제○조의 위반행위를 하면/제○조 또는 제○조의 위반행위를 하면/제○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◇조(양벌 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/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○조부터 제○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

1 소개

2 용어

3 문장

4 작성례

5 어문규정

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하고, 제△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을 ★★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과태료

제○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★★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○조에 따른 ★★명령을 위반한 자
 2. 제○조제○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/거짓 신고를 한 자
 3. 제○조제○항에 따른 ★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 4. 제○조에 따른 ☆☆의무를 위반한 자
 5. 제○조를 위반하여 ★★장관/시·도지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★★를 하지 아니한 자
 6. 제○조에 따른 ★★장관/시·도지사의 명령·검사·요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★★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★★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다만, 제○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>

제○조(유효기간) 제○조의 개정규정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◇조(다른 법률의 폐지) 「~법」은 폐지한다.

제○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법률 제○호 ~법은 폐지한다.

제○조(◆◆에 관한 적용례) 제○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○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○조(★★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~법의 규정에 따라 ★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★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◇조(★★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★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★★년까지는/★★개월까지는 제○조에도 불구하고 ★★업을 할 수 있다.

제○조(★★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★★장관이 한 허가는 이 법에 따라 ★★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★★장관에게 한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○조(종전의 「~법」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「~법」에 따라 한 고시, 행정처분,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, 각종 신청·신고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○조(★★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★★업자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○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○○까지는 제○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○조(★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★★위원회와 ★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♥♥위원회와 ♥♥위원회로 본다.

제○조(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○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~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6항 중 “제24조제3항”을 “제2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~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24조제4항”을 “제2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~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행정재산 및 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한다.

제○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「~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1 소개

2 용어

3 문장

4 작성례

5 어문규정